

부속서 9A
현재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제 1 절
주 해

1. 적절한 경우, 유보에 대하여 유엔통계국 통계책자 시리즈 엠 제77호 1991년 잠정중앙상품분류(유엔상품분류코드)에 규정된 잠정중앙상품분류를 참조한다.
2. 이 부속서는 제9.3조·제9.4조·제9.5조·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취한 유보가 기재된다.
3. 제9.3조·제9.4조·제9.5조·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는 유보내용에 기재된다. 유보를 해석할 때에는 유보의 모든 요소들을 그 전체로서 고려한다.
4. 현지 주재 및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 주재에 대하여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부속서 9A에 열거된 불합치 조치가 중앙정부의 조치이고 이 협정 발효 후 지방정부에 위임된 경우, 그 지방정부는 그 후에는 중앙정부가 가졌던 것과 같이 그 불합치 조치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같은 수준의 권리를 가진다.
6.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유보와 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 Add.1에 명시된 관련 지침과 함께 해석되어야 된다.
7.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말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말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엔상품분류코드 또는 국내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말한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의무(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 마. **현행법령**은 유보가 적용되는 불합치 조치와 관련된 법률·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조치 또는 그 밖의 형태를 적시한다. **현행법령**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유효한 기존의 조치와 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이다.
- 바. **유보내용**은 유보가 적용되는 불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그리고
- 사. **축소계획**은 있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자유화를 위한 약속을 규정한다.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및 제8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대통령령 제18221호, 2004. 1. 13)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행령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외국인투자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외국인직접투자”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이행 요건

현행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법률 제7154호, 2004. 1. 29)
동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8415호, 2004. 6. 5)

유보내용 투자

일정 수 이상(현행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한대로 전체 근로자 수의 5%(현행 2%)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1 건축설계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6503호, 2001. 8. 14)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교통부령 제368호, 2003. 7.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건축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안에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산업안전보건서비스 대행·진단 등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 건설, 공학 및 그 밖의 기술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2900 그 밖의 교육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3199 그 밖의 보건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제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서 안전보건 관련 규정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유형: 안전관리대행기관(제15조), 보건관리대행기관(제16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제30조), 지정교육기관(제31조), 지정교육기관(제36조), 지정검사기관(제4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제43조), 안전보건진단기관(제49조)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그 밖의 사업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52~4 과학 및 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측량업)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측량법 제39조(법률 제7102호, 2004. 1. 20)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대통령령 제18476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교통부령 제404호, 2004. 7. 2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측량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설치하고登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18조 별표 2의 규정은 현지 주재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광고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1 광고 서비스

유보유형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방송법 제13조, 제73조(법률 제7213조, 2004. 3. 22)
 방송광고공사법 제11조(법률 제6138호, 2000. 1. 12)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사회 임원이나 대표가 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186호, 2004. 3. 11)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건설교통부령 제383호, 2003. 12. 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교통영향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적절한 자격증(교통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2 물리적 특성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6941호, 2003. 7.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제28조(법률 제7171호, 2004. 2. 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영업 사무소를 설치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품질 검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업(서비스)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감리전문회사”로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21, 822 부동산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법률 제6236호, 2000. 1. 28)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 제5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교통부령 제338호, 2002. 11. 1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법률 제6655호, 2002. 2. 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제14조(건설교통부령 제354호, 2003. 4. 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안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정평가사 사무소,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하거나 인가(감정평가법인)를 받아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소매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63211 중 의약품 소매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약사법 제1조, 제35조 및 제41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만이 대한민국 안에 약국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또는 고용된) 면허를 가진 약사에 대하여만 일반 대중에 대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허용된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그 밖의 사업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8442 인쇄·출판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6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619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행법령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2조, 제14조(법률 제6721호, 2002. 8. 2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관광부령 제73호, 2003. 2. 27)
영화진흥법 제6조(법률 제6632호, 2002. 1. 26)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7616호, 2002. 5. 27)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화관광부령 제66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5조(법률 제7131호, 2004. 1. 2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문화관광부령 제57호, 2001. 11. 16)
공연법 제6조, 제7조(법률 제6632호, 2002. 1. 26)
공연법 시행령 제4조, 제6조(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관광부령 70호, 2002. 9. 1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국내 배급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 (가)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 (나)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외국 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인은 대한민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나)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 (마)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직업알선사업, 인력공급 및 근로자 파견사업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20 인력 배치 및 공급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p>직업안정법 제19조, 제33조(법률 제5884호, 1999. 2. 8)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7조 (노동부령 제174호, 1999. 8. 2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률 제5512호 1998. 7. 1) 동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 교역</u></p> <p>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우 다음 기준 이상 규모의 사무실을 설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직업소개사업 : 20제곱미터 (법인의 경우 : 33제곱미터) - 근로자 파견사업 : 66제곱미터 - 근로자 공급사업 : 33제곱미터 <p>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조사 및 경비업 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경비업법 제3조, 제4조(법률6787호, 2002. 12. 18)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대통령령 제18124호, 2003. 11. 11)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자치부령 제209호, 2003. 11. 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 수준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과학조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510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의 조사 및 탐사개발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제8조(법률 제 5809호, 1999. 2. 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4986호, 1995. 12. 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 관할해역 안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조사개시 6월 전에 조사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해 안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관련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0113 탈곡하지 아니한 벼 상품분류코드 0115 보리 한국표준산업분류 01212 육우사육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1312 육류도매업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8222호, 2003. 12. 31)
유보내용	<u>투자</u>

대한민국 국민만이 벼 및 보리 재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900 그 밖의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조, 제11조, 제16조, 제16조 2항, 제17조, 제22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법률 제6455호, 2001. 3. 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용자를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과 그 세부 규정에 의거 정하는, 합법적인 훈련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쿠리어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512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상업서류송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구비하고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시청각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612 영화상영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행법령 영화진흥법 제28조(법률 제6632호, 2002. 1. 26)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7616호, 2002. 5. 27)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관에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분야	통신
하위분야	기본통신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59조의2, 부칙 제4조 전과법 제2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

-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 (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전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주식회사케이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대표, 외국법인 또는 단체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안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대한민국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건설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511~518 건설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이행 의무
현행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0조(법률 제6938호, 2003. 7. 25)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3조, 제33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27조(건설교통부령 제371호, 2003. 8.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의하여, (대표자를 명시하여)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또한, 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최소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자가 한화(韓貨)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아래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일정비율을 하도급 하여야 한다.

- 한화(韓貨) 20 ~ 30억 규모의 공사 : 최소한 계약금액의 20%
- 한화(韓貨)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 최소한 계약금액의 30%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건설기계 임대, 유지보수, 판매 및 폐차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518 건설기계대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862 유지 및 보수 상품분류코드 83107 운영자 없는 건설기계·장비 임대·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6363호, 2001. 1. 16)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5의2조, 제65의3조(건설교통부령 제373호, 2003. 9. 2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수리업, 매매업, 폐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업목록은 대통령령에 따르며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신고를 한 자가 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한달 이내에 등록기준을 재충족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고의 절차, 신고증 교부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 건설, 공학 및 그 밖의 기술적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두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자문서비스
하위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대행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909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8700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1132 연료·에너지 관련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2조(1979. 12. 2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에너지 사용 기업 또는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 실시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관자는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동 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대행기관은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62111 미가공 농산물 및 산 동물 중개서비스 상품분류코드 6221 미가공 농산물 및 산 동물 도매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축산법 제27조 (법률 제6821호, 2002. 12.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3조, 제47조(법률 제6699호, 2002. 5. 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한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한다. 공판장은 농림수협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개설한다.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3 고등교육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고등교육법 제23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8조 사립학교법 제3조,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8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사립학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 기본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내외의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점으로 2분의 1 이상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고등교육기관(부속서 9B에 기술된 유형을 제외한 4년제 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은 첨단과학기술, 기초과학, 국제학, 대학별 특성화 관련분야에서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또는 당해 국가 정부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4 성인교육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8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인대상 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 한한다.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성인교육기관이 연수시설로 등록된 경우, 위 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로 수도권 지역에서 제한된다.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대기오염물 측정 및 저감서비스 수질오염물 측정 및 저감서비스 폐기물 수집 및 처리서비스 소음·진동 모니터링 및 저감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유독화학물질 처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61(성분 및 순도검사) 상품분류코드 94010~94060 & 94090(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법률 제7168호, 2004. 2. 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제18조(법률 제6913호, 2003. 5. 29)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40조(법률 제6913호, 2003. 5. 29)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020호, 2003. 12. 3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 제39조(법률 제7129호, 2004. 1. 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제20조, 제26조(법률 제6153호, 2000. 1. 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법률 제7022호, 2003. 12. 30)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법률 제6515호, 2001. 9.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법률 제6909호, 2003. 5. 2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대한민국에서 상기 하위분야 및 산업분류에 규정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을 설립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대기오염물 저감서비스 수질오염물 저감서비스 폐기물 수집 및 처리서비스 유독화학물질 처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61* 성분 및 순도검사 상품분류코드 92900 그 밖의 교육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10* 하수처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20* 폐기물 처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30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60*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90*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행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법률 제6913호, 2003. 5. 29) 폐기물관리법 제26조(법률 제7022호, 2003.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5조, 제28조(대통령령 제18471호, 2003. 6. 30)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8464호, 2004. 6. 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6조(법률 제6153호, 2000. 1.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환경부령 제132호, 2002. 10. 1)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7433호, 2001. 12. 19)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법률 제7168호, 2004. 2. 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대한민국은 상기 하위분야 및 산업분류에 규정된 서비스에 대하여 관련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은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구역을 제한받을 수 있다.

상품분류코드 86761* : 대기, 물, 소음, 진동에 대한 측정, 검사 및 분석 서비스는 제외함

상품분류코드 94010* :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함

상품분류코드 94020* :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함

상품분류코드 94060* & 94090* : 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함

분야 화학제품 제조

하위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24212 생물학적 제품 제조

유보유형 이행 요건

현행법령 약사법 제34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보건복지부령 제227호, 2002. 11. 5)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대한적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원료혈액 물질을 공급받아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세무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3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세무사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 5, 제2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대한민국에서 세무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세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세무법인만 설립 가능하다.

세무조정서비스는 세무조정반, 세무법인만 공급가능하다.

「세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하기 원하는 세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경 간 공급 또는 해외소비를 통한 세무조정·세무대리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에 대하여는 양허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그 밖의 세무(관세)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309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제9조(법률 제6778호, 2002. 12. 1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하기 원하는 관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관세사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관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회계)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2조, 제23조, 제26조(법률 제6994호, 2003. 12.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6991호, 2003. 12. 1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대한민국에서 회계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의 실무경력을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감사인 외부감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에서 2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서비스(노무 관련 자문서비스)

산업분류 공인노무사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공인노무사법 제5조 (법률 제 7046호, 2003.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하기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변리사)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2130 법률상 문서 및 증명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변리사법 제5조, 제6조(법률 제6753호, 2002. 12. 5) 동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18387호, 2004. 5.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에서 그 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변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이수하고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안에 1개소의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엔지니어링활동주체)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4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5 엔지니어링관련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법률 제6535호, 2001. 12. 19)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6567호, 2001. 12. 31)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대통령령 제17771호, 2002. 11. 6)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과기부령 제41호, 2002.1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뉴스제공업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62 뉴스제공업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이행 의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p>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28조(법률 제6905호, 2003. 5. 29)</p> <p>동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p> <p>전과법 제20조(법률 제6905호, 2003. 5. 29)</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p> <p>뉴스통신사가 일부라도 외국자금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뉴스통신사가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뉴스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뉴스 통신 편집인으로 고용될 수 없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p> <p style="padding-left: 40px;">(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p> <p>외국정부,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이나 단체는 뉴스통신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p>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뉴스통신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대한민국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뉴스사의 임원이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외국의 뉴스통신사는 국내 통신사와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 뉴스통신을 공급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기술적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61 공기, 물, 소음 및 진동 이외의 순도·성분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2 물리적 성질의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3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의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9 그 밖의 기술적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6019호, 1999, 9.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6315호, 2000, 12. 2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6676호, 2002, 3.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기술적 시험 및 분석을 위한 기업 설립과 관련 서비스는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다.

분야 제조업 및 유통 서비스

하부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시장 접근

현행법령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법률 제7067호, 2004. 1. 20)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45조, 제56조(대통령령 제18445호, 2004. 1. 2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재정경제부령 제385호, 2004. 1. 29)

국세청 고시 2003-17, 26

주세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40조, 제43조(법률 제7031호, 2003. 12. 31)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45조, 제56조 (대통령령 제 18178호, 2004. 12. 30)

국세청 고시 2003-17,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 담배 >

담배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의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령 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만 한다.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의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령 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만 한다.

외국산 담배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의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령 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만 한다.

< 주류 >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장(제조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곡류의 수급균형과 주질 관리를 위하여 주류의 종류와 원료의 사용량이 제한될 수 있다.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또는 군의 주류 도매업자의 숫자는 인구와 주류판매점의 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온라인상의 주류 판매는 전통 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31, 732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 글라이더토잉, 낙하산 낙하, 항공건설, 별목 및 건축 목적의 헬리콥터 활용(헬리콥터를 이용한 별목), 항공 관광(유람) 등 포함 상품분류코드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조의2, 제298조, 제299조(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u>투자</u>

「항공법」 제6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 또는 국제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 및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라) 상기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마)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또한,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상기 (가) 내지 (마)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항공기 사용사업 상품분류코드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 *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 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분사, 항공사진 그 밖의 항공농업, 항공검사 및 감시 등 포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34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298조, 제299조의2(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u>투자</u>

항공기사용사업(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라) 상기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마)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3101 운영자 없는 자동차 대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3105* 운영자 없는 그 밖의 육상운송 장비 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30조(법률 제6942호, 2003. 7. 25)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건설교통부령 제394호, 2004. 2. 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유지·보수, 판매, 폐차)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6112+ 8867/8 도로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상품분류코드 6111* 자동차 판매(중고차)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유지보수·폐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무소(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교통·환경오염 등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868* 항공기 유지·보수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항공법 제137조, 제138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제305조(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항공기의 유지·보수 서비스(항공기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에 따라 사무소를 설립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자동차 정기검사)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5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제87조(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대한민국에서 등록번호판 제작·인도·봉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영업소)를 설립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항공운송 판매)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309조(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여권 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 제외)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에 앞서 사무실을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해상운송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211 여객운송, 상품분류코드 7212 화물운송 상품분류코드 7213 선원이 포함된 외항선박 임대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214 예선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21 외항선박 운송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선박법 제2조, 제6조(법률 제5972호, 1999. 4. 15) 선원법 제104조(법률 제5973호, 1999. 4. 15) 해운법 제5조, 제26조(법률 제6774호, 2002. 12. 11) 항만법 제29조(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표자인 법인이 소유한 선박만을 대한민국에 등록할 수 있다.

연안해운은 대한민국 선박에 유보된다. 그러나, 연안운송은 남북한 간 운송을 포함한다.

국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대한민국 선박에는 대한민국선원만이 승선할 수 있다.

예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가소유 예선을 소유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해상운송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4520 도선 및 선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30 항행보조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40 선박구난 및 운항재개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 운송보조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해운법 제34조(법률 제6774호, 2002. 12. 11) 도선법 제6조, 제20조(법률 제6610호, 2002. 1. 14) 선박안전법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법률 제5971호, 1999. 4. 15)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법률 제6966호, 2003. 8. 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대한민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사가 될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50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 도선사를 승선시키고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만이 난파선박의 구조 또는 선박의 해체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만이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32 수의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률	수의사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7조(법률 제6611호, 2002. 1. 1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지방자치정부의 모든 현존 불합치 조치

제3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보험법, 제64절 제142조(2002년 개정판), MAS 고시 제109호
은행법, 제55절 제19조(2003년 개정판), MAS 고시 제757호
금융회사법, 제30절 제108조(2000년 개정판), MAS 고시 제816호
싱가포르통화당국법, 제28절 제186조(1999년 개정판), MAS고시 제 1105호
증권산업법, 제15조(1986년), MAS 고시 제1201호
증권 및 선물법, 제101절 제289조, SFA 04-N04

유보내용 투자

1. 비거주금융주체에게 건당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여 신용을 확대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하여 싱가포르 달러 표시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역외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 인출시 또는 해외송금 이전에 해외 송금 이전 또는 손실로 인하여 외국 통화로 전환되거나 교환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달러 통화 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 금융주체에게 싱가포르 달러 신용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비거주자”라는 용어는 은행법상 발행된 MAS 고시 제757호에 정의된다.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행정정책이며, PSA법인의 정관 및 협약문에 기재되어 있다.

유보내용 투자

PSA의 외국인 총 지분소유는 49%의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 총 지분소유”는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는 지분의 총 수로 정의된다.

(가) 싱가포르 국민이 아닌 개인. 그리고

(나) 싱가포르 국민 또는 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50% 이하가 소유된 법인. 그리고

(다) 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기업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행정정책이며, 아래의 관련 기업의 정관 및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 정부와는 별도로, 모든 투자가는 아래 기재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분소유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가) 싱가포르 기술 엔지니어링 - 15%

(나) PSA - 5%

(다) 싱가포르 항공 - 5%

(라) 싱가포르 전력, 전력 그리드, 전력 공급, 전력 가스 10%

본 유보 목적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소유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분 소유를 포함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기업등록법, 제32조(2001년 개정)
기업등록법 규칙, 규칙 9
기업법, 제50조 145(1)절 및 368(1)(e)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고용허가증 소지자(노동
부로부터 인가원칙 서한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만이 지방 관리
인의 지정없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민, 싱가포르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고용허가증 소
지자만이 지방관리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지방법인회사는 다음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가) 최소한 회사의 이사 1명은 싱가포르에 거주하여야 한다.

(나)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외국회사의 지점은 싱가포르에 거
주하는 2인 이상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고용허가증 소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국가토지법 314장 제13절 및 제19(1)절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의 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국가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건축설계 서비스

건축설계 서비스는 이득 또는 포상 목적 하의 건축물 또는 그 일부
분의 건설, 확장 또는 개조를 위한 모든 건축설계 계획, 그림, 등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판매 및 공급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서비
스는 소방안전 규정 이행을 위한 건물의 인증 및 점검을 포함하
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건축사법 제12장, 제15 내지 17절, 제20 내지 26절(2000년 개정)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건축위원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건축설계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건축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 및 합명회사(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무소의 일부로서 건축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건축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각 법인 또는 합명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
여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

(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경우, 건축설계 서비스와 관련된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등록 건축사인 중
역 또는 공동 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유한회사의 경우 회장 및 회사 중역의 2/3 이상이 싱가포
르에 등록된 건축사이거나 관련 전문가여야 한다. 무한회

사의 경우 중역 또는 구성원은 등록된 전문건축사이거나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의 자본/자산의 금전적인 이익 및 수익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관련 전문가가 소유하여야 한다.

관련 전문가라 함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토지 측량사 및 엔지니어를 말한다.

축소계획

싱가포르 거주요건은 2005년 4월까지 폐지된다. 법인의 중역 중 2/3 이상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유사한 전문가여야 한다는 요건은 2005년 4월까지 51%로 축소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금융감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211 금융감사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2004년 회계사법 제10(1)절, 제17(3)(d)절 및 제18(3)(c)절
2004년 회계사(공공 회계사) 규칙 별표 2, 제7항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서비스 공급자 및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만이 공공 회계사로 등록되며 회사 감사로 선임된다. 싱가포르 공공 회계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되는 한, 회사 및 회계법인 사업은 싱가포르에 평소 거주하는 공공 회계사의 관리 및 통제를 받아야 한다.

분야	사업-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토지 측량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토지 측량사법 제156장 제12-16절, 제22-28절(1992년 개정) 토지 측량사 규칙 2-2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에서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토지 측량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여야 하며, 싱가포르에서의 측량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및 합명회사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무소의 일부로서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각 법인 또는 합명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 (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등록된 측량사인 중역 또는 공동 출자자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경우, 토지 측량 서비스 관련 업무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등록된 측량사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유보내용

(나) 법인의 경우, 모든 중역은 등록된 측량사 또는 관련 전문가여야 하고, 종류별 지분의 2/3 이상이 등록된 측량사 및/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소유이어야 하며 이들 명의로 등록되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등록된 측량사 및 관련 전문가만이 자본자산의 금전적인 이익 및 수익을 가질 수 있다.

관련 전문가라 함은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및 건축가를 말한다.

축소계획

싱가포르 거주 요건 및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지분의 각 종류별 2/3 이상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측량사 및/또는 관련 전문가에 의하여 소유되며, 이들 명의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2005년 1월까지 폐지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특허대리인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특허법 제22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싱가포르 특허청에 등록된 자만이 싱가포르에서 특허대리인으로서 영업, 개업 및 활동이 허용된다.

적어도 1인 이상의 등록된 특허대리인을 이사 및 파트너로 둔 회사만이 싱가포르에서의 특허대리 관련 영업, 개업 또는 활동이 허용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인력 배치 및 공급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204 국내 지원인력 공급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고용기관법 제92조 2절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싱가포르에 고용 기관을 세우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싱가포르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 이들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중계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동 유보는 부속서 9B의 자연인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보사항과 함께 해석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엔지니어링 원칙 및 데이터의 응용을 필요로 하며 국유/사유 공공시설, 건물, 기계, 장비, 공정, 공익 및 공공복리 또는 생명의 보호, 공공보건 및 공공 재산 등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서비스, 자문, 조사, 평가, 계획, 설계 또는 건설 또는 운영에 대한 책임감독을 포함한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전문엔지니어법 제253장 제10절, 제11절, 제20~26절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유보내용

전문엔지니어위원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과 합명회사(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무소로서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전문엔지니어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각 법인 및 합명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경우,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된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한 법인 중역의 51%가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 무한회사의 경우, 모든 중역 또는 구성원은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의

자본/자산의 금전적인 이익 및 수익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의 소유이어야 한다.

관련 전문가라 함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토지측량사 및 건축가를
말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22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한 비주거 부동산 관리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센토사개발회사법 제291장 제9항 1998년 개정(1998. 5. 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센토사개발회사 및/또는 그 승계기관만이 센토사 휴양 섬과 그 수로 및 싱가포르 남부 도서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개발자는 센토사 및 싱가포르 남부 도서의 특정 지역을 상업적, 주거, 휴양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본 유보의 목적상, “싱가포르 남부 도서”란 세인트 존스섬, 라자루스섬, 쿠수섬, 푸라우 렌기트, 시스터스섬, 푸라우 한투, 푸라우 비올라, 푸라우 중, 그리고 푸라우 테쿠코르를 말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동식물 및 동식물 부산물 시험, 분석 및 인증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농식품 및 수의 허가법 제5조(2001년 개정판) 동물 및 조류법 제7조 4절(2002년 개정판) 식물 통제법 제57A조, 27절(2000년 개정판)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현지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싱가포르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동식물 및 동식물 부산물에 대한 시험, 분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 물품이 재수출목적의 수입 및 수입·수출의 목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수사 및 보안 서비스
하위분야	사설 수사서비스, 비무장 경호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301 수사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7302 보안 자문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7305 경호서비스(비무장 보안경호 서비스의 경우 에만 적용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사설 수사 및 경비 기관법 제249조, 규칙 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말레이시아 국민만 사설 수사 또는 보안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보안 경호원 또는 사설 수사관으로 고용될 수 있다. 외국인인 기업의 행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

비무장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25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현금 수송 경호업무로부터 배제된다.

부속서 9B의 싱가포르 무장 경호서비스 관련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분야	공동체, 인력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공동협력 협회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52 회원제 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공동협력 협회 서비스에만 적용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공동협력 협회법 6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현지 주재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공동협력 협회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시 해당 공동협력 협회는 그 밖의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조치로부터 면제된다.

일반 원칙으로서 싱가포르 국민만이 공동협력 협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도 사안에 따라 공동협력 협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민이 아닌 자도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협력 협회를 구성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공동협력 협회는 사안에 따라 싱가포르 공동협력 협회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의사 양성 관련 고등교육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390 그 밖의 고등교육서비스 (의사 양성과 관련된 고등교육서비스에만 적용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의료 등록법, 제5장, 전문직 인증위원회, 제2절, 제3절, 제34절, 제35절
유보내용	<u>투자</u> 국내 고등교육기관만이 의사 양성을 위한 학부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p>콘택트렌즈사</p> <p>조산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및 준의료 서비스(간호 및 조산 서비스에 한함)</p>
산업분류	<p>-</p> <p>상품분류코드 93191 조산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및 준의료 서비스 (간호 및 조산 서비스에 한함)</p>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간호사 및 조산사법, 제209조, 제26절 내지 제30절 콘택트렌즈사법, 제53A조, 제4절 내지 제7절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 무역</u></p> <p>< 콘택트렌즈사 ></p> <p>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콘택트렌즈사가 될 수 있다.</p> <p>< 간호사 및 조산사 ></p> <p>싱가포르간호사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간호 및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의료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312 의료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2004년판 의료등록법 제174조, 제13절, 제21절 및 제23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싱가포르의료위원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민이 아닌 자로서 싱가포르의료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완전한 등록자격 취득 이전에 6년간의 조건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약국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	약사등록법 제230조 제5절 내지 제8절 및 제11절 내지 제14절 의약품법 제176조 제4편, 약국, 의약품(약사등록) 규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싱가포르약국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약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약국회에 등록된 약사(의료 전문인과는 별도)만이 의약품법 제176조에 정의된 의료용품을 사전준비, 조제, 조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분야	수입, 수출 및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수출입규제법 제272조 A, 수출입규제규칙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현지 주재하고 있는 기업만이 수출입허가, 원산지증명서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그 밖의 무역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분야	제조업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행법령	제조관리법 제57절(2001년 개정)
유보내용	<u>투자</u>

싱가포르 내에서의 다음 제품의 제조는 내국민 대우 및 이행 요건 의무에 일정한 제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가) 맥주 및 흑맥주
- (나) 엽권련
- (다) 압연 철강 제품
- (라) 씹는 껌, 풍선 껌, 치과용 씹는 껌, 그 밖의 유사한 물질(의료법 제176조의 의미 내에서의 의료용품 또는 그 법의 54절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물질은 제외)
- (마) 담배. 그리고
- (바) 성냥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법(IDA) 제137A조, 통신법 제32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시설기반사업자는 싱가포르 회사법 제50조(1994년 개정)에 따라 구성된 회사이어야 한다.¹⁾

서비스기반사업자는 싱가포르 회사법 제50조(1994년 개정)에 따라 구성된 법인이거나 등록된 외국기업이어야 한다.

부여되는 허가의 수는 라디오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가능성 등과 같은 자원의 한정에 의하여서만 제한된다. 주파수 한정을 고려하여, 무선기술에 기반을 둔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당사자들은 입찰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라디오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을 허가받는다.

1) 전국근거리통신망, 지역채널 다지점 분배서비스, 적외선 및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공중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정 무선인프라만을 구축하는 시설기반사업자는 싱가포르 기업법 제50조(1994)에 따라 등록된 외국기업일 수 있다.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싱가포르 영역(.sg)에 해당하는 인터넷 국가 최상위 도메인에서의 도메인 네임 할당 정책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법 제137A조 통신법 제323조 국제인터넷관리기구-각 국가의 영역에 대응하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주권 인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등록자는 싱가포르 회사법 제50조(1994년 개정)에 따라 구성된 법인 등록된 외국기업이어야 한다.

분야	전력공급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전기법 제89장 제6(1)절 및 제9(1)절(2002년 개정판)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외국인의 소유 여부, 싱가포르 내 위치 여부, 전력생산자는 싱가포르 전기 도매 시장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싱가포르 외에 위치한 전력생산자가 싱가포르 도매전력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누적적 전력 총량은 600MW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야	전력공급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전기법 제89A조, 제6(1)절 및 9(1)절(2002년 개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SP 서비스 유한회사 및 송계기관만이 다음의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가) 모든 전기 소비 가정. 그리고

(나) 월평균 소비가 10,000kWh 이하인 비가정 전기소비자. 그리고

(다) 단일형태의 낮은 전압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소비자

분야 전력 송배전 전송 및 유통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전기법 제89장 제6절 및 제9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전력자산 유한회사 및/또한 그 승계기관만이 전기법에 정의된 송전면허자가 될 수 있다.

전력자산 유한회사 및/또한 그 승계기관만이 싱가포르 내에 있는 전기송전 및 배전망의 단독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될 수 있다.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위험물질의 유통 및 판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환경오염관리법 제94A조 제22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현지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환경오염통제법에 정의된) 위험물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소매서비스 도매무역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의약품법 제176조 제6(3)절, 제36절 및 제37절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현지 대리인을 지정한 서비스 공급자만이 환자의 상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치료, 완화, 예방 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및 건강 관련 제품과 물질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품목에 대한 도매, 소매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상품 및 물질은 마약 및 의약품,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제품, 진단용 시험기구, 의료기기, 화장품, 담배제품,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 기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 항공 여객 운송, 항공 화물 운송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31 항공 여객 운송
	상품분류코드 732 항공 화물 운송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 지정 항공사로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여객, 화물 분야 모두 적용)는 싱가포르가 체결한 양자간 및 다자간 제항공협정의 “실효적 통제” 및/또는 “실질적 소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협정의 요건 준수는 이 서비스 공급자가 싱가포르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제항공협정에 규정된 실효적 통제의 조건 및 외국인 소유 제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화물처리서비스 도선서비스 싱가포르 항 또는 싱가포르 영해에 접안 중인 선박에 대한 급수 공급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41 화물처리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25 도선 및 정박서비스(도선서비스에만 적용) 싱가포르 항 또는 싱가포르 영해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급수공급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1997년 개정판 제81절 제170A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서비스 공급자만이 화물처 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 항만공사 및/또는 그 승계기관만이 싱가포르 항만 및 영해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 및 급수공급을 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1997년 개정판 제81절 제170A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면허받은 서비스 공급자만이 크루즈 및 여객선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해운법 1996년 개정판 제8절 제179조
해운법(선박등록)(수정), 2004년 규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법인만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민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과반을 차지하지 아니 하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은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되기 전에 적어도 1,600GT이상이어야 하고 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싱가포르 법인은 현지에서 구성된 회사이어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1997년 개정판 제40절, 제170A조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선원 등록 및 고용)규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만이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에 정의된
 대로 싱가포르 선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분야 제조가스 및 천연가스(파이프로 수송된 가스) 생산, 판매, 운송 및 배분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가스법 제116A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도시가스 유한회사 및/또는 제조가스를 생산하고 소매로 판매할 수 있다.

전력가스 유한회사 및/또는 그 승계기관만이 제조 및 천연가스(파이프로 수송된 가스)를 운송 및 유통할 수 있다.

전력가스 유한회사 및/또는 그 승계기관만이 싱가포르 내에 있는 가스파이프라인의 단독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될 수 있다.